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10. 12 선고 2017가단85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고도산업

피고A

변론 종결 2017. 9. 21.

판결 선고 2017. 10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포천시 B 대 1,484㎡ 중 별지 도면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⑬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대지 121㎡ 지상에 건축된 같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⑨, ⑩, ⑪, ⑫, ⑬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목조 흙벽 및 시멘트블록조 스투지붕 단층주택 및 가건물 90.97㎡ 및 같은 도면 표시 ④, ⑤, ⑥, ⑦, ⑭,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스투지붕 가건물 8.61㎡를 철거하고, 위 선내(가) 부분 대지 121㎡를 인도하고,

나. 150,354원 및 2017. 8. 1.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19,460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송진호

별지